

#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

(의견서 번호 : 24-35)

기관 및 부서명	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
건명	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 관련

## 1. 사업개요 (추진 일정 등)

### □ 개요

- 사업명 : □□시 하수관로(△△ 하수처리구역) 기술진단용역
- 사업내용 : 하수관로(L=94.7km) 연결 상태, 시설 문제점 등 진단 및 개선
-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10개월 ※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에 따라 2024년 시기 도래
- 사업비 : 584,000,000원
- 시행자 : □□시장

### □ 관련 법령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(정의), 제35조(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)
-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1조(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)
- 「하수도법」 제20조(기술진단 등), 제20조의2(기술진단의 대행 등)
-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14조(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)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」 제2장의2 제2절 세부평가기준

## 2.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사유

- 「하수도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
- 이에 □□시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입찰 시 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」 및 「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」(이하 “경기도 세부평가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왔음
- 그러나,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의견\*에 따라 2024. 2월 개정된 경기도 세부평가기준에서 상하수도 사업이 제외되어 현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에 대하여 적용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없는 상황임

\* 환경부는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상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는

다고 회신함(생활하수과-4507, 2023. 11. 20.)

- 이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제2장의2 제2절 제1호 나목에 따른 '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적격심사'를 기준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

### 3. 검토의견

- 「하수도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
-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내용은 공공하수도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,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,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, 시설의 유지·관리 방안으로 되어 있음
- 또한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이란 시설물의 운영·검사·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·유지·관리·보수·보강 및 철거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(제2호),
  -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(제3호),
  -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
- 이에 시설의 유지·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이 「건설기술진흥법」의 건설기술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관원질의 결과
  - 국토교통부는 「하수도법」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이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 제2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「하수도법」 소관 부처에서 상기 규정 및 사업 특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(기술혁신과-2551, 2024. 7. 1.)하였고,
  - 환경부는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고, 「하수도법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술진단 대행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은 각 용역의 과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결정할 수 있다고 기 회신(생활하수과-4507, 2023. 11. 20.)한 바 있음
- 위와 같이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의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「하수도법」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

○ 따라서, 이 건은 입찰 시 「하수도법」 등 관련 법령에 ‘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’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제2장의2 제2절 제1호 나목에 따라 ‘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’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■ 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,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